

농어촌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서

‘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’와 ‘한국농촌경제연구원’ 및 ‘YTN’은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이익의 확대와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농어촌의 미래에 대한 정치·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키고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의제들의 정책화와 제도화를 목표로 방송 콘텐츠를 비롯한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농어촌 발전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협력) ①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촌 혁신을 위한 <다자간 포럼>과 농어촌 개발 선진국 벤치마킹 등 농어촌이 미래를 열어가는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, 추진한다. ②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와 YTN은 농어촌 지역 특화 발전에 기여할 방송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제작 방송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
제3조(협약서 이행) ① 각 기관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규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한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. ② 협약 체결 사항의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에 관한 업무는 각 기관의 담당 부서에서 관장한다.

제4조(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) 이 협약에 규정한 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5조(협약기간) 본 협약은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기간은 1년으로 한다. 다만, 본 협약을 중도에 해지코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1개월 전에 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, 종료일까지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 협약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하되 각 기관의 협의를 통해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.

제6조(비밀유지) 협약에 참여하는 각 주체는 업무 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상대 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며, 상대 기관의 비밀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아니한다.

제7조(해석)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일반적 통례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8조(그 밖의 사항)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프로그램 기획 및 YTN의 방송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제작 방송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약 체결 이후 별도 협의를 통하여 시행한다.

본 협약서의 성실한 이행과 협약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협약에 참여하는 각 주체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년 6월 24일

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회장 이 홍기
이 홍기

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세균
최세균

YTN 대표이사 사장 조준희
조준희